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
—퇴직 예정자의 상태·특성불안과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the Middle-Aged Men Who Expect to
—Emphasizing upon the State-Trait Anxiety and the Opinion
on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김향은
교수정옥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Kim Hyang Eun
Prof. Chung Ock B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middle-aged men who expect to retire in order to bring up the problems of present retirement system, and suggest more desirable solutions connected with social welf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non retirement group", aged 40-44(N=70) and "retirement group", aged 50-54(N=60) who were full-time employee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sychological anxiety levels of the two groups were assessed by the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composed of 40 item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creased anxiety level by retirement"(state anxiety-trait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increased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group.

The state anxiety of the retirement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retirement-related factors such as health state, the presence or absence of leisure

activity and plan for later life, etc.

The opinion of the two groups on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was generally negative. The two groups prefered the voluntary retirement to involuntary retirement and considered that the retirement time must be prolonged to the age of 60 or 65.

I. 서 론

오늘날과 같은 직업 중심적 산업 사회에서 퇴직이라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기(대부분 55세)의 강제 퇴직이 횡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퇴직을 맞는 당사자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퇴직 후에 보내게 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또한 핵가족화와 부양 의식의 변화에 따라 노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혼 연령과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의 진수가 지연되면서 퇴직을 맞는 시점에서도 자녀 부양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조기 정년, 퇴직에 대한 준비 부족,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퇴직을 스트레스나 불안의 대상으로 지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퇴직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그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지 소수의 연구만이 퇴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 정년 연령이 높은 공무원(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퇴직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년 제도의 유형이나 실태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 즉, 조기에 강제퇴직을 하게 되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직전의 상황을 스트레스의 개념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빈약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퇴직을 앞두고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현행 정년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토해 볼 것으로써, 조기 정년제의 재고 등 노인복지정책 수

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퇴직의 의미

(1) 일과 퇴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일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동시에 생활의 일과를 준다. 또한 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감의 핵심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생활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최신덕 역, 1985).

이처럼 일은 인간에게 있어 생활의 구조와 의미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로부터의 이탈(퇴직)은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에서 부양 인구로의 전환보다도 더 큰 존재 의미의 상실을 유발하여(이광규, 1984), 퇴직을 앞둔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2) 퇴직 이론

사회학적 견지에서 퇴직을 조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이 있다.

분리 이론에 따르면, 노년에 이르러서 개인과 사회간에 상호 철회(mutual withdrawal)의 과정으로 분리가 이뤄지며, 이러한 분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반면 활동 이론은 사회참여 정도와 생활 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건강상의 변화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도 중년과 다름없는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도도 높아진

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분리 이론보다는 활동 이론이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 이론에 입각하여 퇴직에 따른 역할 상실이 곧 심리적 불안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퇴직자 주위의 사회 환경의 변화

(1)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의 상승

전반적인 국민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5.3세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1970년에 63.2세, 1980년에 65.8세, 그리고 1990 현재에는 71.3세로 증대되었다. 또한 오는 2000년에는 74.3세, 2020년에는 77세(경제기획원, 1990a)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어, 정년 연령과 평균 수명간의 격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년을 맞는 55세 남성의 연대별 기대 수명은 1955년-1960년에 15.6년에서 1970년에는 15.79년, 1978-1979년에는 16.17년, 그리고 1989년에는 18.4년으로 연장되었다(경제기획원, 1990b). 즉 퇴직 후에 보내게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은 퇴직 후의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족구조와 노후 자립의식의 변화

산업화 이후로 우리 나라의 가족 구조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가족 별거율은 1985년 22.6%(임종권, 1985)에서 1988년에는 25.3%(이가옥, 1989)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노후 부양 책임에 대한 의식 역시 크게 변화되어,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부양관은 점차 퇴조하고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1986년에 실시한 바 있는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85.9%)가 대체로 자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핵가족화 추세와 노후 자립의식의 증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노후를 위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노후보장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이 정년을 앞둔 당사자들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생활 주기의 변화

고학력 사회화의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1977년만 해도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아들의 경우 56.3%, 딸의 경우 33.6%에 불과했으나 1990년 현재에는 각각 86.3%와 75.7%로 증가하였다(경제기획원, 1990b).

한편 남녀의 결혼 연령도 크게 상승하여, 1960년에 남자 25.4세, 여자 21.6세였던 것이 1970년에는 27.1세와 23.3세, 1980년에는 27.3세와 24.1세, 그리고 1990년 현재에는 28.6세와 25.5세로 늦춰졌다(경제기획원, 1990b)

이와 같은 고학력 추세와 만혼 경향에 따라 자녀의 진수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부모기”에 해당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되었고, 퇴직을 맞는 시점에서도 자녀 부양을 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퇴직이라는 사건은 일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중년 가장에게 심각한 위기적 사건으로 지각되기 쉽다.

3. 퇴직과 심리적 불안

(1) 불안의 개념과 정의

흔히 불안을 스트레스나 위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stress)는 어느 정도의 육체적·심리적 위험을 띤 객관적인 상황 자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협(threat)은 그 상황이 다소 위험하다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개인의 지각을 말한다. 한편 불안(anxiety)은 특정 순간에 개인이 느끼는 긴장, 우려, 근심 등의 주관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유동적인 정서 상태로서의 불안(상태 불안)과 시간이 흘러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격 특성으로서의 불안(특성 불안)의 개념으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상태 불안이라 함은 퇴직과 관련해서 느끼게 되는 불안을 뜻하며, 특성 불안이라 함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뜻한다.

(2) 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Vinokur와 Selzer(1975)의 말대로 생활 사건이란 생활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 생활의 변화는 대개가 환경의 요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불안이나 우울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 중에서도 정년 퇴직은 특히 남성에게 있어 다른 어떤 생활 사건보다도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Bromley, 1974). 여성들은 줄곧 표현적인 역할(expressive role)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더라도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고 자신의 일과 역할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단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에만 전념해 왔으므로 퇴직 후 여가 위주의 생활에 대한 적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남성의 정체감은 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0여년간 종사해 온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일면 “생활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퇴직이라는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연구 대상의 기초 사항

연구 대상의 기초 사항 조사에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연령, 직종, 직위, 학력, 생활수준)을 묻는 5문항과 퇴직 관련 요인(건강 상태, 여가 활동의 유무, 퇴직 후 생활 계획 수립의 유무, 가장 걱정되는 문제, 노후생활 준비도)¹⁾을 묻는 5문항 등 총 10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 집단의 경우에는 이 10문항 모두를 조사하였으나,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5문항만을 조사하였다.

(2) 현행 정년 퇴직 제도에 대한 견해

현행 정년 퇴직 제도에 대한 견해에는 바람직한 퇴직 유형, 현행 정년 연령에 대한 견해, 정년의 연장을 희망하는 이유, 가장 적당한 퇴직 시기, 정년을 앞둔 고령자로서 직장에서 받는 대우²⁾ 등을 묻는 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심리적 불안

심리적 불안은 Spielberger 등(1970)의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I는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4점 척도를 계산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991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

1) 퇴직관련요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퇴직에 대한 태도나 퇴직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변인들을 선별한 것이다.

2) 이 문항은 나중에 퇴직관련요인별 상태 불안의 분석에도 포함된다.

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정년을 앞둔 50~54세의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배경, 가족 사항, 경제 여건,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상태 불안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상태 불안 외에 특성 불안을 추가하였고, 40~44세의 일반 집단을 포함하였다. 본조사는 서울시내 소재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임의표집하여 199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과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상태-특성 불안 점수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의 불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로, 정년을 앞둔 퇴직 집단(50-54세)과 일반 집단(40-44세)으로 구분된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일반 집단은 41-43세에, 퇴직 집단은 50, 51, 54세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직종은 일반 집단은 사무직, 관리직, 기술직이, 퇴직 집단은 관리직, 사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직책은 일반 집단은부장과 차장이, 퇴직 집단은 임원과 부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연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자기 자신을 중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1. 퇴직 집단과 일반 집단의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1)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의 집단간 비교 개인적 불안 성향인 특성 불안과 퇴직과 관련된 상태 불안을 집단간 비교해 본 결과, 퇴직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두 집단은 기본적인 불안 성향에서 뿐 아니라 퇴직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안 정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 참조).

(2)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집단내 비교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집단내 비교해 본 결과, 두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퇴직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 본래의 불안 성향보다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을 소지하고 있었다(〈표 2〉 참조).

(3)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차이에 대한 집단간 비교

두 집단 모두 특성 불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으로 인해 유발된 불안 증가분(상태 불안-특성 불안)을 집단간 비교한 결과 퇴직 집단의 불안 증가분이 일반 집단의 불안 증가분 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1〉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의 집단간 비교

	특성 불안			상태 불안		
	M	SD	t	M	SD	t
퇴직 집단(N=60)	44.13	7.62	3.31**	60.30	7.22	9.25***
일반 집단(N=70)	39.76	7.44		46.89	9.03	

** p < .01

*** p < .001

〈표 2〉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의 집단내 비교

	퇴직 집단(N=60)			일반 집단(N=70)		
	M	SD	t	M	SD	t
상태 불안	60.30	7.22	20.91***	46.89	9.03	6.41***
특성 불안	44.13	7.62		39.76	7.44	

*** p < .001

〈표 3〉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차이에 대한 집단간 비교

	상태 불안 - 특성 불안		
	M	SD	t
퇴직 집단(N=60)	16.23	5.90	6.53***
일반 집단(N=70)	6.99	9.16	

*** p < .001

2. 퇴직 관련 요인에 따른 퇴직 집단의 상태 불안

퇴직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 불안의 수준을 퇴직관련요인 -(1) 건강 상태, (2) 여가 활동의 유무, (3) 퇴직 후 생활 계획의 유무, (4) 가장 걱정되는 문제, (5) 노후 생활 준비도, (6) 퇴직을 앞두고 직장에서 받는 대우—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퇴직관련요인별 상태 불안의 비교

요인		N	M	SD	F	Grouping
(1)	매우 건강함	6	54.00	1.79	7.44*** (t value)	A
	건강한 편임	32	58.50	5.40		A
	보통	12	62.50	8.35		A B
	나쁜 편임	10	67.20	0.52		B
	매우 나쁨	0				
(2)	유	24	55.83	6.03	20.34*** (t value)	
	무	36	63.28	6.41		
(3)	유	12	53.60	5.10	12.32** (t value)	
	무	48	61.64	6.58		
(4)	생계 문제	18	64.56	7.96	5.71** (t value)	A
	자녀 교육·혼인 문제	26	59.31	5.52		B
	고독·소외 문제	16	57.13	6.94		B
	건강 문제	0				
(5)	충분히 잘되어 있음	0			16.23*** (t value)	A
	비교적 잘되어 있음	14	55.71	5.57		A
	별로 되어있지 않음	28	58.50	5.37		A
	전혀 되어있지 않음	18	66.67	6.76		B
(6)	유리하다	0			9.99*** (t value)	
	불리하다	42	62.10	7.41		
	무관하다	18	56.11	4.66		

** p < .01

*** p < .001

〈표 5〉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견해

		일반 집단		퇴직 집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임의 퇴직	50	71.4	32	53.3	82	63.1
	자연 퇴직	16	22.9	26	43.3	42	32.3
	강제 퇴직	4	5.7	2	3.3	6	4.6
(2)	적당하다	15	21.4	0	0.0	15	11.5
	연장해야 한다	47	67.1	56	93.3	103	79.2
	단축해야 한다	0	0.0	0	0.0	0	0.0
	폐지해야 한다	8	11.4	4	6.7	12	9.2
(3)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3	5.5	18	30.0	21	18.3
	일할 능력이 있어서	46	83.5	34	56.7	80	69.6
	사회에 기여하고자	5	9.1	4	6.7	9	7.8
	여가 선용의 방편으로	1	1.8	4	6.7	5	4.3
(4)	55세	15	21.4	0	0.0	15	11.5
	56-59세	4	5.7	6	10.0	10	7.7
	60세	15	21.4	26	43.3	41	31.5
	61-64세	12	17.1	8	13.3	20	15.4
	65세	20	28.6	18	30.0	38	29.2
	70세	4	5.7	2	3.3	6	4.6
(5)	유리하다	5	7.1	0	0.0	5	3.8
	불리하다	44	62.9	42	70.0	86	66.2
	무관하다	21	30.0	18	30.0	39	30.0
	계	70	100.0	60	100.0	130	100.0

건강 상태에 따라 상태불안을 비교한 결과 건강이 나쁠수록 상태 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건강한 집단과 비교적 나쁜 집단, 비교적 건강한 집단과 비교적 나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활동의 유무에 따라 상태 불안을 비교한 결과 특별히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태 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의 유무에 따라 상태 불안을 비교한 결과,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태 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별로 상태 불안을 비교한 결과 걱정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계 문제와 자녀 교육·혼인

문제, 생계 문제와 고독·소외 문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별로 상태 불안을 비교한 결과 노후 생활 준비도가 낮을수록 상태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잘 되어있는 집단과 전혀 되어있지 않은 집단, 별로 되어있지 않은 집단과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퇴직을 앞둔 고령자라는 사실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상태 불안을 비교한 결과,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무관하다고 보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현행 정년 퇴직 제도에 대한 견해

일반 집단과 퇴직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정년제

도에 대한 견해 -(1) 퇴직유형, (2) 혼행 정년 연령에 대한 견해, (3) 정년의 연장을 회망하는 이유, (4) 가장 적당한 퇴직 시기, (5) 퇴직을 앞두고 직장에서 받는 대우 등 - 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참조).

퇴직 유형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는 임의 퇴직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연금 수혜 연령에 달했을 때 퇴직을 하는 자연 퇴직을 선호하였다. 한편 일정한 연령에 달했을 때 퇴직을 강요당하는 강제 퇴직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고 있었다. 정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두 집단을 통틀어서 하나도 없었고, 혼행 정년 연령이 적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일반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정년의 연장을 회망하는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아직까지 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퇴직 집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서 정년의 연장을 회망한다는 견해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적당한 퇴직 시기로는 두 집단 모두 60세 이상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집단별로는 일반 집단은 65세를, 퇴직 집단은 60세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앞둔 고령자라는 사실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을 통틀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으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는 일반 집단에서만 소수를 찾을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로부터 몇 가지의 논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50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같은 중년 남성인 40대 초반의 직장인들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심리적인 불안이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사실 특성 불안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안정된 불안 성향을 말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특성 불안 마저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퇴직과 관련된 상태 불안이 개인의 특성 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퇴직 집단이 느끼는 상태 불안은 여러 가지 퇴직관련요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수록 상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신보연(1983), 김혜경(1988)의 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활동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퇴직 후 역할 상실의 노년기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박재간·김태현, 1986) 의미있는 여가 선용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동배, 1990).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퇴직에 대한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최성재(1989), 지연경·조병은(1991), Glamser(1976), Woodruff와 Birren(198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걱정이 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생계 문제가 자녀 문제나 소외 문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야기했다. 즉 퇴직을 앞두고 느끼게 되는 불안의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을수록 상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혜경(198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노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기존의 연구(신보연, 1983; 김홍삼, 1987)와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거의 또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혼행 정년 퇴직 제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퇴직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임의 퇴직>자연 퇴직>강제 퇴

직 순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윤진호(1983), 김홍삼(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현행 정년 연령에 대해서는 더 연장해야 한다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윤숙(1982), 신보연(1983), 김홍삼(198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기 정년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년의 연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나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홍삼(198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바람직한 퇴직 시기로는 60세와 65세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윤진호(198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김홍삼(1987), 김영모(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정년을 앞둔 고령자라는 사실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을 앞둔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무(1983)의 연구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직장에서 받게 되는 압력이라든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임으로써,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들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기의 강제 퇴직이라는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정년의 연장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사실 조기에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그만큼 일찍 사회가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낭비와 모순을 낼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요구를 해결해 준다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과도한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관점에서도 정년 연장의 문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정년 연령이 계속 고수된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면, 퇴직을 맞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봉과 물가고에 시달려 온 근로자 개인이 퇴

직 전부터 퇴직 후의 대책을 마련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적 부조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박종기, 1989). 이러한 실정에서 퇴직을 맞게 되는 근로자들은 얼마 안되는 퇴직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편을 참작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이 시급하다. 동시에 퇴직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장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정책에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째, 아무리 제도적 뒷받침이 훌륭하다 해도 퇴직자 자신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퇴직 준비 교육의 보편화 및 활성화가 요청된다. 퇴직으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퇴직 준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진계환, 1987).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지 소수의 기업만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편을 참작하여, 각종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1990a.
- 2)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90b.
- 3) 김동배, “노인 여가선용과 정체과제”, 노인생활, 1·2, 1990, pp. 24~29.
- 4) 김영모, 한국 노인복지정책 연구, 서울 : 한국복지 연구원, 1990.
- 5) 김혜경, “은퇴 전후간 신체 및 정신건강 지각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1988.
- 6) 김홍삼,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7) 박재간·김태현,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 1986, pp. 27~39.
 - 8) 박종기, “노령인구 계층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책”,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9) 배상무, “정년을 앞둔 중등교원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0) 신보연, “도시노인의 은퇴와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1) 윤진호, “정년퇴직 공무원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2) 이가옥 외, 노인 단독가구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13) 이광규, “정년자의 생활복지”, 산업사회와 정년,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 14) 이윤숙,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의식구조”, 최신 의학, 25, 1982, pp. 113~134.
 - 15) 임종권,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16)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17)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한국인의 생활의식 조사, 1986.
 - 18) 지연경·조병은,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1, pp. 217~240.
 - 19) 진체환, “은퇴자를 위한 노후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0) 최성재,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1989, pp. 47~65.
 - 21) 최신덕 역, 노년사회학, 서울 : 경문사, 1985.
 - 2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구조, 1984.
 - 23) Atchley, R.C., *Social Forces in Later Life*(2nd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 1980.
 - 24) Bromley, D.B.,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 (2nd ed.), Middlesex, England : Penguin, 1974.
 - 25) Cattell, R.B. & Scheier, I.H., *Handbook for the IPAT Anxiety Scale*(2nd ed.), Champaign, Ill. :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1963.
 - 26) Glamser, F.D., “Determinants of a Positiv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1(21), 1976, pp. 104~107.
 - 27) Henry, W.E., “The Theory of Intrinsic Disengagement”, *Age with a Future*. Copenhagen : Munksgaard, 1964.
 - 28) Kimmel, D.C.,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4.
 - 29) Lemon, B.W., Bengtson, V.L., & Peterson, J. A.,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1972, pp. 511~523.
 - 30) Mandler, B. & Sarason, S.B., “A Study of Anxiety and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1952, pp. 1166~1173.
 - 31) Spielberger, C.D. & Diaz-Guerrero, R.,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Anxiety”, *Cross-Cultural Anxie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6.
 - 32)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 33) Taylor, J.A., “The Relationship of Anxiety to the Conditioned Eyelid Respons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1, 1951, pp. 81~92.
 - 34) Vinokur & Selzer, “Desirable vs. Undesirable Life Events :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 1975, pp. 329~337.
 - 35) Woodruff, D.S. & Birren, J.E.,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2nd ed.), California : Brooks /

- Cole, 1983.
- of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 36) Zuckerman, M., "The Development of an
1960, pp. 457~462.
Affect Adjective Check List for the Measurement